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허성무 · 임오경 · 윤준병
김종민 · 조인철 · 이병진
남인순 · 이재관 · 이강일
권향엽 · 권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가산액을 포함한다)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지급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그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청구에 의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일시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반환일시금) ①·② (생략) <u><신 설></u>	제77조(반환일시금)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 가산액을 포함한다)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지급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으로 본다.</u> <u>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그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청구에 의하여 남은 기간</u>
<u><신 설></u>	

③ <u>제1항</u>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u>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u> ⑤ <u>제1항 및 제4항</u>----- ----- ----- -----.
--	--